

審查結果報告書

1.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產業·建設委員會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회부일자 : 96. 9. 6 화순군수

나. 상정일자 : 96. 10. 23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문두식

나. 제정이유

- 준농림지역내에서 학교교육, 주민정서, 지역개발사업계획, 상수원확보, 수질보전, 기타 명승사적, 유원지 등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 행위 제한에 관한 지역의 지정을 위함.

다. 주요내용

-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14034호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법률이 완화되자 준농림 지역내 무분별하게 숙박시설 및 음식점이 난립하고 있어 '95. 10. 19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관련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본군에서도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동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위 제한 지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 기초조사를 토대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 또는 해제토록 하고 있는바, 금회 준농림 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 安	
번 호	

제출 년월일 : 1996. 8.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화순군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제정근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3. 주요내용

목적 (안 제1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 (안 제4조 1항)

- 학교 정화구역안에서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행위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 :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

행위제한지역 고시 (안 제4조 3, 4항)

조례제정후 행위제한지역은 해당부서에서 기초조사실시 후 별도 지정고시

행위제한 내용 (안 제4조 2항)

○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3조 제1항 제2호)

제한의 특례 (안 제5조)

관광진흥 및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허용구역을 고시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 적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의 입안기준에 의거 동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라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3. "숙박업"이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4. "관광숙박업"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이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타법령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영위하기 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은 타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행위허가등 제한지역의지정) ①군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시설의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1. 학교 정화구역안에서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3.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지역사업에 지장을 초래할것이 예상되는 지역.
4.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기타 명승, 사적,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6.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거나, 조수류 및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
- ② 제1항의 고시지역안에서의 제2조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할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해당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발전 추세와 장기적인 여건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제한의특례) 군수는 관광진흥 및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 허용할수 있다.

이 경우 그 허용구역을 정하여 제6조의 고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고시의 내용)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고시할때에는 다음 사항이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범위.
3. 제한행위의 내용.
4. 제한기간.
5. 제한지역의 범위등을 표시한 도면 (1/5,000 이상)
6. 기타숙박업소등의 설치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접객업 제한지역 기초조사서 및 도면작성

1) 기초 조사내역

지구 번호	행정 구역 읍면동	제한지역 주요시설	지역의 현황	제한법위 설정의 제안(조사자 의견)	심사 의견	종합판단	비고

2) 도면작성 : 1/5,000 도면에 제한지역 표시

조사자 :
심사자 :